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에 의한 피해구제 등〉

■ 노종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75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적용대상 확대 및 개념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3
2. 중재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정비(안 제7조 및 제8조)	14
3. 중재지원센터 설치 및 증거조사 기능 부여(안 제11조 및 제20조)	19
4.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 제도 개선(안 제14조부터 제17조의2까지, 제27조)	23
5. 허위보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안 제18조, 제30조부터 제30조의4 까지)	38
6.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 ...	49
※ 참고자료	55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노종면의원 등 24인

나. 제 출 일 : 2026. 5. 27.

다. 회부연월일 : 2026. 5.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24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 이에 해당 법령 체계 및 구조를 참고하여 허위보도 및 조작보도, 허위조작보도를 정의하고 이를 포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개념을 정비함.

아울러 의혹 제기 또는 주장에 관한 보도라도 이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을 명확히 정의함.

한편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등청구 권한, 정정보도등 게재 방식, 손해의 배상 등의 수단은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명확하고,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받고 있음.

이에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을 정하게 하되 매체의 특성에 따른 게재 방식을 명문화함.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것 외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진행 절차 및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여부 및 결과, 관련 소송 제기 여부 및 결과 등 정정보도청구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또한 지난 2025년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체계 및 구조를 반영하여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적용대상 확대 및 개념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개정안은 언론보도의 인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목적 규정에 인용을 추가하고, 언론보도·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정의를 개정하는 한편, 허위보도·조작보도·허위조작보도,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및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제공자, 언론등·언론사등·언론보도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용(引用)과 매개-----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13. “언론사등의 대표자”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등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	제2조(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언론사의-----언론사----- ----- -----

현행	개정안
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 신문 또는 외국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4.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5.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단서 신설> 16.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	-----, -----. ----- ----- ----- ----- ----- ----- -----. 14. <삭 제> 15.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행위와 이를 위하여 만들어진 기사 또는 제작물을-----, 다만, 의혹 제기 또는 주장에 관한 보도라도 근거 제시 행위와 제시된 근거는 언론보도에 해당할 수 있다. 16. -----언론보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별도로 보도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언론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내용을 정정하거나 그 보도 전부를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17. -----언론보도의 사실

현행	개정안
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신설> <신설>	----- ----- --- 17의2. “허위보도”란 언론보도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기사 또는 제작물을 말한다. 17의3. “조작보도”란 언론보도에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기사 또는 제작물을 말한다. 17의4. “허위조작보도”란 허위보도 또는 조작보도 중 허위보도 또는 조작보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사 또는 제작물을 말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8. -----언론보도를----- ----- ----- ----- ----- -----
19. (생략) <신설>	19. (현행과 같음) 19의2.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란 언론사 또는 언론사의 자회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현행	개정안
<신설>	<u>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보도, 인용할 목적으로 제작·편성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u> 19의3.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제공자”란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또는 언론사의 자회사를 말한다.
<신설>	22. “언론등”이란 언론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신설>	23. “언론사등”이란 언론사와 언론등의 사업자 또는 제공자를 말한다.
<신설>	24. “언론사등의 대표자”란 언론사의 대표자와 언론등의 사업 또는 제공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5. “언론보도등”이란 언론사등이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자체 제작을 통하여 알리는 행위와 그 제작물, 그리고 이를 인용 또는 매개하여 재확산하는 행위와 그 제작물을 말한다.
<신설>	26. “허위보도등”이란 언론사등이 허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5조(언론등에 의한 <u>피해구제의 원칙</u>) ① <u>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u>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② 인격권 침해가 <u>사회상규(社會常規)</u>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u>보도 내용과</u>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u>위보도 또는 조작보도를 하거나 허위보도 또는 조작보도를 인용 또는 매개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하여 사용된 기사 또는 제작물을 말한다.</u> 27. “<u>허위조작보도등</u>”이란 언론사등이 <u>허위조작보도를 하거나 허위조작보도를 인용 또는 매개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사용된 기사 또는 제작물을 말한다.</u> 제5조(언론등에 의한 <u>피해구제</u>) ① 언론등은----- ----- ----- ----- ----- ----- ----- ----- -----. ② ----- ----- ----- ----- ----- -----<u>보도, 인용, 매개와</u>-----.

현행	개정안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을 포함하여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언론보도’를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정정보도’를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 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으로, ‘반론보도’를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26년 1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허위정보, 조작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규정이 신설¹⁾됨에 따라,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 생략)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이하 생략)

개정안은 목적 규정에 언론보도의 인용을 추가하고, 언론보도·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정의를 정비하는 한편, 허위보도·조작보도·허위조작보도,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및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제공자, 언론등·언론사등·언론보도등의 개념을 정의하여 언론중재법의 적용 범위·개념 등을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특히, 정의규정 관련 개정안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의 진실성” 있는 보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언론중재법」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허위정보·조작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체계를 차용하여, “허위보도·조작보도”와, 허위 또는 조작보도에 해당함을 알았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사 등을 의미하는 “허위조작보도”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를 정정보도 청구신청, 정정보도 방식, 조정신청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감안하는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관련 정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 및 개정안 주요사항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주요개념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의 진실성	<삭 제>
		<신 설>	- 허위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기사 등 - 조작보도: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기사 등 - 허위조작보도: 허위보도 또는 조작보도에 해당함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사 등 (풍자 및 패러디 제외)
법 적용대상		기존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u>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사업자 추가</u>
정 정 보 도	대상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 인한 피해, 의혹 제기 또는 주장 보도라도 근거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적인 사실관계가 누락된 경우
	기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u>3개월</u> 보도가 있는 날부터 <u>6개월</u>	보도가 있는 날부터 <u>2년</u>
	방법	서면	서면, 전자우편, 홈페이지
	수용	3일 이내 수용여부 통지	3일 이내 미수용 시 <u>간주거부</u>
	게재	언론사-피해자 협의	<u>매체별로 정정보도 방식 구체화</u>
언론중재위 사무처		“사무처”로 운영 *사무처에서 증거조사	사무처에 <u>“중재지원센터”</u> 설립 *중재지원센터에서 증거조사
중재위 위원		정당원, 선거후보자 등록자	정당원·선거후보자등록·퇴직 <u>3년 미경과자 등 결격사유 추가</u>
보도원본 보관기간		6개월	<u>2년</u>
조정신청		손해배상액 명시	<u>허위(조작) 보도여부 명시</u> 추가
손해배상		손해액 산정 곤란시 법원이 산정	<u>허위(조작)보도 감안해서 손해배상액 산정</u> <u>손해액 산정 곤란 시 5천만원 내 산정</u>
입증책임		<신 설>	- 사실입증: 언론사 - 고의·과실 입증: 피해자
손해배상 납용특칙		<신 설>	공공이익 목적으로 정당한 비판 및 감시 활동 방해 목적 시 손해 청구 금지, 피고 중간판결 신청 가능
과징금		<신 설>	허위조작보도등 확정사안 반복적 보도시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다만, 개정안 논의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언론보도의 ‘인용’을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언론보도의 범위에서 인용보도를 제외하고 있지 않고 다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여 작성한 보도 역시 언론보도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피해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실적 주장’의 정의를 삭제하고 언론보도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적 주장’은 그동안 판례²⁾를 통하여 의미와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해당 정의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의 경우 특정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기보다는, 플랫폼의 규모와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언론보도를 포괄할 수 있도록

2) 대법원은 「언론중재법」 상 ‘사실적 주장’을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고 판시하면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을 구별할 때에는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과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보도가 게재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수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을 참고하여 허위보도·조작보도·허위조작보도 등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도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가 가능³⁾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보도·정정보도·반론보도 등의 정의를 정비하고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실적 주장”의 삭제, “허위보도·조작보도·허위조작보도” 개념 신설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법원행정처는 ‘인용’의 방식이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그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 관련 단체 등은 허위보도·조작보도·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예측가능성과 통상적인 취재·편집 및 정보 유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특히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사 수정 및 삭제를 정정보도에 포함하기 보다는 별도의 피해구제수단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허위보도 등의 개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쟁점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중재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정비(안 제7조 및 제8조)

개정안은 중재위원의 자격요건에 언론 관련 사건 수행 경력, 인터넷 기반 취재·보도·제작 업무 경력 등을 반영하고, 중재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원 경력, 선출직 공직 경력,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문·고문 경력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경력 등을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u>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u>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u>언론 보도등으로</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
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u>법원행정처장이</u> 추천한 사람	1. ----- <u>언론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하였던 자로서 법원행정처장이</u>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 <u>변호사법</u> 」 제78조에 따른	2. ----- <u>--언론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하</u>

현행	개정안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있던 자로서 「변호사법」----- ----- -----
3.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보도·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보도·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u>학식과 경협이 풍부한 사람</u>	4. ----- <u>학식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u> -----
④ ~ ⑪ (생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 (생략)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u>당원</u>	2. ----- <u>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u>사람</u>	3. ----- ----- <u>사람 또는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신설>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현행	개정안
<u><신설></u> 4. 5. (생략) ③ (생략)	<u>아니한 사람</u> 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법관·변호사·언론인 및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중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 후보자 및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등을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법관 및 변호사인 중재위원에게 언론 관련 사건 수행 경력을 요구하고, 언론인인 중재위원의 경력에 인터넷 기반 취재·보도·제작 업무를 포함하는 한편, 일정한 정치활동 관련 경력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중재위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여 조정·중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법관 및 변호사인 중재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추가되는 ‘언론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한 경력’은 ‘다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추천권자의 판단을 제약하거나 중재위원 후보자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언론인인 중재위원의 자격요건에 ‘인터넷 기반 취재·보도·제작 업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자문·고문 등 정치활동 관련 일부 경력은 객관적인 확인이 어렵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력은 인용조문이 잘못 표기⁴⁾되어 있어 그 대상 범위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개정안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위원 신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인수위의 설치 및 존속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수위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를 인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언론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한 경력” 등 불명확한 문구의 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법원행정처는 ‘언론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한 사람’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경우 추천권을 제약할 수 있고, 언론 관련 연구·전공 등 다른 경력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언론 관련 단체 등도 ‘다수’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거나 추천 대상의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고, 인터넷 기반 업무 경험을 별도의 필수요건으로 추가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중재지원센터 설치 및 증거조사 기능 부여(안 제11조 및 제20조)

개정안은 언론보도등으로부터의 피해구제와 조정·중재 활동 지원을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에 중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재지원센터가 언론보도등의 허위·조작 여부 등에 관한 기초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1조(사무처) ① ~ ③ (생략)	제11조(사무처와 중재지원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언론보도등으로부터 피해를 구제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중재 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무처에 중재지원센터를 둔다.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중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정 신청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허위 및 조작 여부, 허위조작 여부에 관한 기초 사실관계 조사
	2. 이 법에서 정하는 의무 조치의 이행 여부 관리 및 감독
	3.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무처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⑥ -----, 제4항에 따른 중재지원센터의 운영 등 -----.

현행	개정안
제20조(증거조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이나 <u>사무처</u>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0조(증거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중재지원센터</u> ----- ----- ----- -----.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이나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고 조정기일에 진술하도록 할 수 있음.

다만, 언론보도등의 허위·조작 여부 등에 관한 기초 사실관계 조사와 법률상 의무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은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허위보도·조작보도·허위조작보도 개념이 추가되고 그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규정하려 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해 중재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사실관계 조사 및 의무조치의 관리·감독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언론보도등의 허

위·조작 여부에 관한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조정·중재 활동의 전문성과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현행법은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거나 조정기일에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도 피해구제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에 따른 중재지원센터의 사실관계 조사 업무는 현행법상 사무처의 업무와 일부 중복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사무처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사무처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①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양쪽에게 조정 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이나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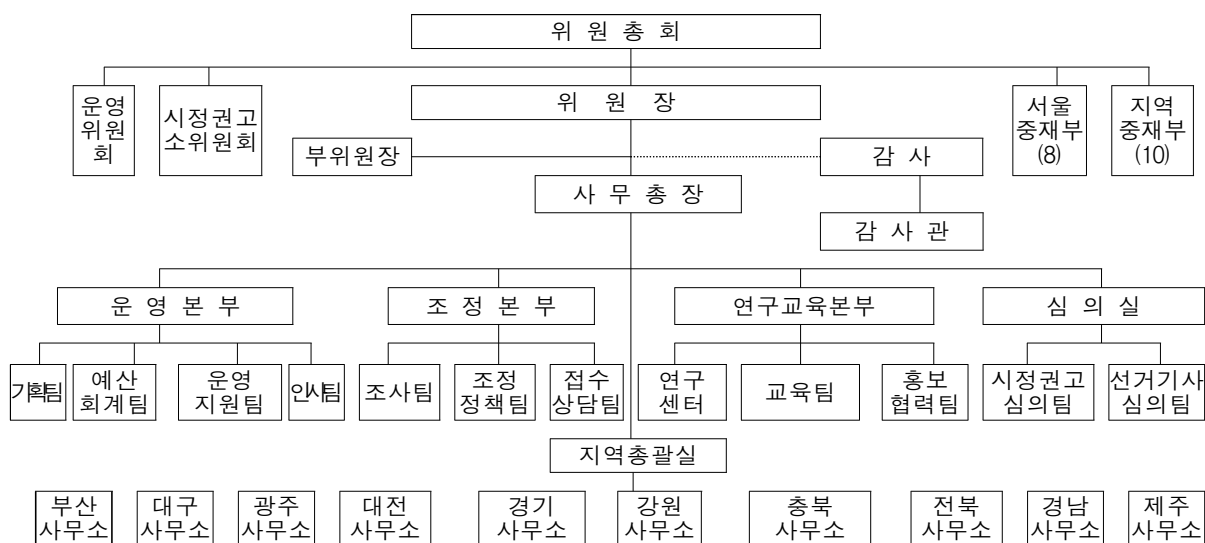
③ 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⁶⁾하고 있음.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재지원센터 설치에 앞서 중재위원회
재원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주체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추가적인 인력
과 예산이 필요하며 관리·감독 업무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6)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 인력 총 100명(3본부(운영/조정/연구교육), 2실(심의/지역총괄), 감사관, 11팀, 1센터, 10지역사무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개정안은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확대하고, 의혹 제기 또는 주장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처분과 관련된 추후보도 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u>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u>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u>있음을</u>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u>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u>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u>정</u>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u>허위 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u> ----- ----- ----- <u>있</u> <u>은 후 2년</u> ----- <u>언론사등에</u> ----- ----- <u>정정 또는</u> <u>삭제와 별도의 정정보도를</u> ----- ----- <u>. <단서 삭제></u>

현행	개정안
<u>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u>한다</u>.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u>내용·크기</u>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는	② ----- ----- ----- ----<u>하고,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u> ----- ----- ----- ----- ----- ----- -----. ③ ----- ----- -----<u>내용·크기</u> <u>·방식</u>-----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현행	개정안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한다.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 사실, 허위보도등인지 허위조작보도등인지의 구별,-----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계속 보도, 인용, 매개 중인 언론보도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의 공표를 포함한다)----- -----. 이 경우 정정보도의 크기, 횟수, 시간, 기간 등은 해당 언론보도등이 허위보도등인지 허위조작보도등인지의 구별, 언론사등의 매체력, 정정보도 대상 언론보도등의 전파력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1.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언론보도등이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등장한 후 첫 순서에 자막(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으로 정정보도문을 표시하고 통상적인 속도의 음성으로 읽을 것 2. 신문: 언론보도등이 게재되었던

현행	개정안
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은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u>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u>	----- ----- ----- -----<u>사본,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공표 후 2년간</u>----- -----<u>. 다만,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중인 언론보도등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자료등을 폐기할 수 없다.</u>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u>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u>	⑧ ----- ----- ----- -----<u>보도등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등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이 조에서 “전자기록등”이라 한다)을 2년간</u>-----<u>. 다만,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중인 언론보도등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전자기록등을 폐기할 수 없다.</u>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u>사실적 주장에</u>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u>사실관계에</u> ----- ----- ----- -----.

현행	개정안
<u><신설></u>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② ~ ④ (생략)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② 의혹 제기 또는 주장에 관한 보도라도 제시된 근거 또는 누락된 사실관계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 ----- ----- ----- ----- ----- ----- ----- ---. 이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 등 그 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아닌 취지의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현행	개정안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뒤 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는 최초의 결정, 판결 또는 합의가 나왔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정, 판결 또는 합의의 내용을 알리는 표시(이하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언론보도등의 제공·매개 관계에 있는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피해자로부터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공·매개 관계의 상대방에게 청구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③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해당 언론보도등을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 이 경우 인터넷

현행	개정안
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설> <신설>	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해당 언론보도등을 매개한 행위를 중단하면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등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④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를 제작할 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청구등의 청구인, 청구대상, 청구일 2. 정정보도청구등의 수용 여부 3. 정정보도청구등의 진행 현황 4.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조정 또는 중재 여부 및 결과 5.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기 여부 및 결과 6. 정정보도청구등과 함께 손해배상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및 결과 ⑤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보도등의 제공·매개 관계에 있는 경우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해당 언론보도등을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지하

현행	개정안
<u><신설></u>	여야 한다. ⑥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가 제4항 각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화면(이하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첫 화면 중 최상위에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으로 연결되는 안내를 표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u><신설></u>	⑦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결과가 확정된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날까지 제4항의 내용을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에서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u><신설></u>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수용, 조정 결정(제22조에 따른 직권 조정결정을 포함한다), 중재 결정, 소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언론보도등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27조(재판) ① (생략) ②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	제27조(재판) ① (현행과 같음) ② ----- ----- -----때에는 제15조제6항에 따라 방송-----

현행	개정안
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③ (생략)	----- ----- -----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혐의 등에 관한 보도 이후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정보도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보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언론사등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 원래의 보도와 같은 채널·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언론보도등의 원본·사본 및 관련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기사에 그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상 정정보도 청구기간이 비교적 짧고 매체별 정정보도의 게재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추후보도청구권은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 하에,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보도가 있는 후 2년까지로 확대하고, 의혹 제기 또는 주장에 관한 보도라도 제시된 근거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적인 사실관계가 누락된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반론보도는 제시된 근거나 누락된 사실관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보도 이후 해당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 등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자우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정정보도의 내용과 매체별 방송·게재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언론보도등의 원본·사본 및 관련 자료·전자기록의 보관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의 적용대상을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청구의 진행 현황과 조정·중재 및 소송의 결과 등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정정보도등의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정정보도 청구기간이 확대되고, 간주거부 제도를 통해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해지며, 정정보도등 여부 및 그 세부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가능성이 제고되는 등 피해 구제의 범위와 절차가 확대·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 논의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의혹 제기 또는 주장에 관한 보도에서 ‘필수적인 사실관계가 누락된 경우’를 정정보도 청구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정보도문에 피해사실과 허위보도·허위조작보도의 구별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 언론사의 정정보도 수용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구체적인 피해 정도나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정보도의 위치와 방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언론사의 편집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정정보도의 구체적인 크기·횟수·시간·기간 등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 간 협의 및 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자율적 분쟁해결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넷째,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언론사의 자료 보관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정보도등을 통한 피해구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보도가 있는 날부터 1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도 정정보도 청구기간에 맞추어 1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매개를 중단한 경우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한편, 법원행정처는 허위보도등의 구별과 피해 사실에 대한 판단으로 정정보도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청구기간 확대에 따라 언론사의 분쟁 대응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기사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민사상 권리구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정보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재판에 관한 규정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5. 허위보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안 제18조, 제30조부터 제30조의4까지)

개정안은 손해배상 조정 및 소송에서 해당 언론보도등이 허위보도등인지 허위조작보도등인지 구별하도록 하고,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5천만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손해배상 소송에서 언론사등의 자료제출의무 및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절차적 특례를 마련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조정신청) ① (생략)	제18조(조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u>손해배상액</u> 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 ----- ----- ----- <u>해당 언론보도등이 허위보도등인지 허위조작보도등인지를 구별하여 손해배상액</u>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u>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u> ② <u>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算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제30조(손해배상) ① <u>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u> ② -----<u>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u> ③ <u>법원은 제5조제2항을 고려하여 제2항의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다.</u> ④ <u>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u>1.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한다) 규모 및 정도</u> <u>2.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u>

현행	개정안
	<u>적 이익</u> 3. <u>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횟수, 전파의 정도</u> 4. <u>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유통에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u> 5. <u>언론보도등이 이미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 판명되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을 유통하였는지 여부</u> 6. <u>언론보도등이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을 유통하였는지 여부</u> 7. <u>언론보도등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허위 또는 조작 내용을 제목이나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u> 8. <u>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u> 9. <u>가해 언론사등의 재산상태</u> 10. <u>가해 언론사등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u>

현행	개정안
<u><신설></u>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u><신설></u>	11.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⑤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언론 보도등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언론보도등의 보도·인용·매개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⑦ ----- 제6항----- ----- ----- ----- -----. 제30조의2(언론사등의 자료제출 의무) ① 언론사등은 법원이 제15조제7항에 따른 자료등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전자기록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은 언론사등의 매체력, 언론 보도등의 전파력, 언론보도등의 허위 및 조작 여부, 허위조작 여부, 손해액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제15조 제7항에 따른 자료등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전자기록등의 제출 또는 제시를 언론사등에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언론사등이 자료 제출 또는 제시하는 절차는 「특허법」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은 “언론 보도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언론사등이 제출 또는 제시한 자료와 그 내용은 법원이 정한 목적과 방법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판결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30조의3(입증책임) ① 언론보도등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언론사등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등을 인용 또는 매개한 언론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인용 또는 매개한 언론보도등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고지한 경우 2. 인용 또는 매개한 언론보도등의 반박적 주장이 담긴 보도를 동시에 인용 또는 매개한 경우 ③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언론보도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현행	개정안
<신설>	책임은 해당 언론보도등의 피해자가 부담한다. 제30조의4(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현행법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가 언론사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침해의 정지·예방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6년 1월 6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정보·조작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손해액 산정 및 남용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절차적 특례 등을 규정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 구조를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에 반영하여,

손해배상 조정신청 시 해당 언론보도등이 허위보도등인지 허위조작보도등인지 구별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5천만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규모,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보도의 유통기간·횟수 및 전파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 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원이 언론사등에 관련 자료와 전자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보도등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언론사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허위보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구체화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이 손해배상청구로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중복하여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5

조제2항에 따라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에도, 이를 손해액의 감액사유로 규정하거나 별도의 면책사유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현행 규정과 중복되거나 상충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셋째, 언론사등에 별도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와의 관계 및 취재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된 ‘매체력’과 ‘전파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넷째, 언론보도등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언론사등에 부담시키는 것은 보도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례⁷⁾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입증책임 규정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론보도에 대해서만 별도의 입증책임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대법원은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해당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임.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다섯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 등을 고의로 유통한 경우 인정되는 가중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남용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특례를 적용⁸⁾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가중손해배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언론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허위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 현행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원칙 및 취재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할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손해배상)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법원행정처는 손해액을 5천만원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손해액을 정하는 법원의 재량을 제약하고, 손해액 인정제도를 규정한 「민사소송법」에도 금액의 상한이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성격이 다른 특허권 침해소송의 자료제출절차를 준용하기보다 언론보도 관련 소송에 적합한 절차를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고, 남용적 손해배상청구의 판단요건이 추상적·불명확하여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6.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

개정안은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3조(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한 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허위조작보도등으로 인한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에 대한 인용 판결,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 또는 유죄판결로 확정된 언론보도등을 2회 이상 보도, 인용, 매개한 언론사등에 대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4항 각 호의 사항(허위보도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33조의2(의견제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현행	개정안
<u><신 설></u>	<u>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u> <u>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제33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u> <u>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u>사본</u>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생략) <u><신설></u>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사본,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정정보도등에 관한 알림 표시 의무, 정정보도 청구등의 청구 사실 통지 의무를

현행	개정안
<u><신설></u> ② (생략)	<u>이행하지 아니한 자</u> 6. 제18조와 제30조에 따라 청구된 <u>손해배상이 결정 또는 판결로 확정되었으나 기한 내에 배상하지 아니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정정보도등 청구, 조정·중재 및 손해배상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정정보도청구등에 대한 인용판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 또는 유죄판결로 확정된 허위조작보도등을 2회 이상 보도·인용·매개한 언론사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의무이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⁹⁾할 수 있고, 대부분의 언론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행정상 제재가 중복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언론보도등과 관련한 자료·기록의 보관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보관대상이 되는 취재자료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언론사가 이를 파악·관리하기 곤란하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셋째, 조정이나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별도의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제도를 통하여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 및 현행 법체계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법원행정처는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고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로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언론의 권력 감시와 비판 기능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손해배상금 미지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서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행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고 실익도 크지 않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

개정안에 대한 타부처 총괄 의견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부처 의견(총괄)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26.6.12.)	- 제11조(사무처와 중재지원센터) 신중검토 - 중재위 운영 재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운용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인바, 중재지원센터 설립은 문체부 소관 법률로 결정하면서 운영 재원은 타부처가 관리하는 기금이 부담하는 구조 - 문체부 소관인 중재위를 방미통위가 방발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소관주의 및 기금사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국회 지적이 반복됨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인 방미통위와 재정당국과의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중재위 운영재원 다각화(언론진흥기금 등)와 연계하여 신중한 추진 필요 * 최형두 의원, 중재위 운영재원을 방발기금이 아닌 언론기금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26.5.13)
법원행정처 (‘26.6.29.)	언론보도로 인하여 명예 등이 훼손된 피해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구제 여부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기존의 정정보도 청구에 너무 많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요건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예를 들면 정정보도 청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허위조작보도의 경우에 한하여 기존 정정보도 청구와는 다른 별도의 구제절차 도입)